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도14349 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9노168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한다
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에 제3자 명의로 대마 매매대금

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면서, 공소외인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 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제정 경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불법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또는 불법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방조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려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거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